



제 417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선용품공급업 미신고시 벌칙에서
과태료로 부과 완화 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1189호)

2024. 8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최 선 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선용품공급업 미신고시 벌칙에서 과태료로 부과 완화	2

I . 제안경위

1. 제 출 자 : 정 부
2. 제 출 일 : 2024. 6. 28.
3. 회 부 일 : 2024. 7. 1.
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선용품공급업 미신고시 벌칙에서 과태료로 부과 완화

가. 개정안의 요지

□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 신설 등).

현행	개정안
제3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1의2. (생략) 2.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	제3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.
제34조(과태료) <신설>	제34조(과태료) ①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① (생략)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·징수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----- -----.

나. 검토의견

-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·선용품공급업·선박연료공급업·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고, 선용품공급업이란 선박에 음료, 식품, 소모품, 밧줄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, 현재 2,866개가 있음.

[항만운송관련 사업현황]

구분	등록				신고
업종	항만용역업	선박연료공급업	선박수리업	컨테이너수리업	선용품공급업
업종수	1,152	786	827	99	2,866

그런데, 현행법은 선용품공급업을 제외한 항만운송관련사업¹⁾은 항만별·업종별로 관리청에 ‘등록’하도록 하고, 선용품공급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‘신고’하도록 하면서,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일하게 규정을 두고²⁾ 있음.

1)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(정의) ④ 이 법에서 “항만운송관련사업”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(役務)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·선용품공급업·선박연료공급업·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,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(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) 「항만운송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선용품공급업: 선박(건조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 등을 포함한다)에 음료, 식품, 소모품, 밧줄,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, 집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

2)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(사업의 등록 등)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·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□ 이에 개정안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등록 업종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 시 현행과 같이 벌칙규정을 적용하되, 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.

신고업종은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등록 업종과 신고 업종 간에 규제에 있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점, 유사 입법례인 「수산업법³⁾」 역시 등록 업종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 시 형벌 규정을 적용하지만 미신고 업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서 선용품공급업 미신고시 벌칙에서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
□ 다만, 안 제34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·징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현행법 제2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를 의미하는바 관리청으로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.

3) 「수산업법」 제48조(신고어업) ① 제7조·제40조·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1조(어획물운반업 등록)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0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3.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

제112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7.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

[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7항]

제2조(정의) ⑦ 이 법에서 “관리청”이란 항만운송사업·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,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.

1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: 해양수산부장관
2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

- 참고로, 정부는 2022년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, 제3차 개선작업으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벌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「항만운송사업법」 등 14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419